



제 41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동관계법률 위반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취소〉

■ 류호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468호)

2024.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노동관계법률 위반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취소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류호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3. 11. 16.

다. 회 부 일: 2023.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센터 종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제2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노동관계법률 위반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취소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시·도지사가 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돌봄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① (생략)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u>

③ · ④ (생략)	<u>법</u>」, 「<u>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u>」, 「<u>최저임금법</u>」, 「<u>산업안전보건법</u>」 또는 「<u>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u>」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및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5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서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관람환경 개선,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¹⁾.

시·도지사는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역여건, 시설 및 안전

-
-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등록문화재
 3. 임시지정문화재
 4.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3.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 실시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하여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동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²⁾.

개정안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근로기준법」 등 5개의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돌봄센터에서 노동관계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지정 취소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적절한 업무 수행’, ‘예산의 부당집행’, ‘거짓 자료 제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미수행’ 등 명확하고 구

2)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기관장이 5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센터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 개별 노동관계법에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 유사 입법례]

취소유형	관련 기관(법률)
고의 또는 중과실	·안전진단기관(공연법) ·지역경제교육센터(경제교육지원법) ·보안심사 전문기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예산 부당집행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창업대학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거짓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 방해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업무 미수행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계량에 관한 법률)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 자료: 문화재청

한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서 실제로 센터장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수당 등 미지급, 시간외근로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는 있으나, 벌금형 이상까지 확정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³⁾.

3) 지역돌봄센터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례 ※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는 없음

문화재청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취소 요건이 위반사항의 구체적 사유와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

관련 규정	미준수 내용
근로조건 명시(제17조)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조건 필수 기재사항 미표기
임금지급(제43조)	임금 일부 미지급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제56조)	야간수당 등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연차수당 미지급 등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70조)	여성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무
임산부의 보호(제74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무
단체협약의 준수(제93조)	취업규칙 내용의 법령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 자료: 문화재청